

시민참여기본법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23
----------	-------

발의연월일 : 2025. 12. 31.

발 의 자 : 이해식 · 허영 · 박상혁
한민수 · 차지호 · 한병도
박정현 · 양부남 · 윤준병
서영교 · 위성곤 · 송재봉
조정식 · 이주희 · 최혁진
민병덕 · 남인순 · 박지원
이용선 · 김영호 · 서왕진
차규근 · 강선우 · 김남희
김윤 · 서미화 · 김남근
염태영 · 천준호 의원
(29인)

제안이유

사회 양극화의 심화, 기후위기와 감염병 확산, 급속한 사회·기술 환경의 변화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직면하면서,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사회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유엔(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는 시민참여를 민주주의의 신뢰와 정당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보고, 시민의 역량 강화, 숙의와 공론의 활성화, 시민사회 활동 여건의 보장을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제시해 왔음.

그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접참여제도 도입, 숙의·공론장 확대, 민주시민교육 촉진, 시민사회 활성화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시민참여 정책을 총괄하여 기획·조정·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가 부재한 탓에 관련 정책이 부처별로 단기적·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등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여 시민정책참여·숙의공론화·민주시민교육·시민사회 활성화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시민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함. 나아가 관련 정책과 제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기획·조정·지원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시민참여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자신의 권리 및 공공의 이익 실현, 사회적 가치 증진 등을 위하여 사회·경제·제도 등 다양한 영역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의 이익증진 및 사회통합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의 이익 증진

및 사회통합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시민은 자신의 권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율적인 시민사회 활동을 수행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안 제5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정책참여, 시민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종합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안 제7조).

마.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시민참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바.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며 이에 필요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5조).

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시민참여위원회를 둠(안 제25조).

아.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시민참여지원센터를 둘 수 있음(안 제25조).

시민참여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의 이익 증진 및 사회통합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참여”란 시민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권리 및 공공의 이익 실현, 사회적 가치 증진 등을 위하여 사회·경제·제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시민정책참여”란 시민이 공공정책의 의제 설정부터 결정, 집행, 평가 단계까지의 전 과정에 자발적·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의 목적이 아닌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시민숙의”란 시민과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하여 공공정책 및 사회현안에 대해 균형잡힌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숙고하여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거나 공통의 인식을 찾아나가는 과

정을 말한다.

5. “공론화”란 공공정책 및 사회현안에 관한 특정 의제나 쟁점을 공공영역에 제기하여 사회적 관심과 논의를 촉발하고 시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말한다.
6.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시민이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보편적 권리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7. “시민사회조직”이란 시민의 권익 옹호, 사회적 가치 실현, 공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 법인 등을 말한다.
8. “시민사회”란 시민, 시민사회조직 등이 시민참여 활동을 하는 영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참여의 권리와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
2. 시민참여를 제약하는 제도적·사회적 요인을 개선할 것
3. 시민참여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4. 시민사회의 자율성·다양성·독립성을 보장할 것

5.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 사회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할 것

6. 지역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존중하고,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할 것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자신의 권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율적인 시민사회 활동을 수행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민참여의 보장 및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 법의 목적 및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참여의 보장 및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민참여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제7조(시민참여 종합체계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정책참여, 시민숙의·공론화(이하 “숙의공론화”라고 한다),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종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참여 종합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2.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
3.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통계구축
4.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시민 및 시민사회조직의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6. 국가·지역 등에서 시민참여에 활동하고 있는 개인·법인·단체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시민정책참여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정책에 관한 의제 설정, 결정,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시민의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정책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정책참여 방법의 다양화 및 협력방안 마련
2. 시민정책참여제도 전반에 대한 조사·평가 및 개선
3. 그 밖에 시민정책참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숙의공론화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공공정책 및 갈등 현안에 관해 시민과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숙의공론화를 보장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공공정책 및 갈등 현안에 대한 숙의공론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숙의공론화 대상 정책 제안 및 선정 기준의 마련
2. 숙의공론화 과정 및 결론, 후속 절차, 정책 반영 결과 등의 투명한 공개
3. 숙의공론화 제도에 대한 조사·평가 및 개선
4. 사안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숙의공론화 방법의 개발과 점검
5. 숙의공론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의 주요 의제를 선정·운영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조(민주시민교육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여 건전한 시민으로서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사·연구 및 교재·교수법 개발
3. 학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및 협력
4.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제11조(시민사회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과 시민사회 조직의 공공적·사회적 활동이 확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절차 및 관행의 개선
2. 시민사회 활동 관련 현황·성과 등 조사 및 통계 구축
3. 시민사회 활동 사례의 발굴·확산 및 사회적 인식 제고
4. 시민사회 활동 주체의 교육·훈련 등 역량 강화
5.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조직·공간·디지털 기술 등 기반 조성
6. 시민사회 활동 영역별 제도 및 행정 체계의 조정과 연계
7.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제12조(시민참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제15조에 따른 국가시민참여 위원회는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시민참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 관련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에 관한 사항
7.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5조에 따른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같은 조에 따른 국가시민참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5조에 따른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국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13조에 따른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제15조에 따른 국가시민참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제15조에 따른 국가시민참여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국가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등

제15조(국가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①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며 이에 필요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2.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에 관한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3.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4. 시민참여 정책·사업에 대한 집행·중복 여부 등 점검 및 조정
5. 시민참여 종합 지수 개발, 현황 조사·평가 및 제도개선
6.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참여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8. 숙의공론화 모델 연구 및 개발
 9. 숙의공론화 유형별 표준지침 마련, 정보 관리·분석 평가
 10. 숙의공론화 결과 및 이행 등에 관한 점검 및 공개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숙의공론화 운영 지원
 12. 민주시민교육 교재 개발 및 전문 인력양성
 13. 민주시민교육 관련 전문교육기관의 관리 및 지원
 14. 시민사회조직의 현황 조사 및 통계 구축
 15. 시민사회 활동 주체의 교육·훈련 등 역량 강화
 16.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조직·공간·디지털 기술 등 기반 조성
 17.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의 투명성 확보 및 성과 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조치 요청
 18.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19.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20.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

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민참여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해당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시민참여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민법」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공익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시민참여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3. 법률·회계·재무 등 전문자격자로서 관련 업무를 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시민참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5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시민참여에 관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보하며, 상임위

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 중 실무적인 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시민정책참여 소위원회
2. 숙의공론화 소위원회
3. 민주시민교육 소위원회
4. 시민사회 활성화 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공무원 등의 파견)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역 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및 집행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시민참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관할 지역의 시민참여에 관한 시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시민참여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참여 영역별로 지원센터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민참여에 관한 시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도위원회,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6조(시민참여 활동에 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 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8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개) ① 위원회는 매년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도위원회는 매년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시·도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시민참여플랫폼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참여 창구를 효율적으로 통합·연계하는 범정부 시민참여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파견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 설치, 위원의 구성·운영, 사무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 전에 시·도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시민참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민참여 관련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5조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